》》 개정령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529호, 2004.8.3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지정지역으로 정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개정령(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0호, 2004.8.3)

1. 개정이유

건설기술 및 건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구조 ·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자 연재해 또는 인재에 의한 건축물의 균열 · 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구조설계 방법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구조설계 방법과 하중치수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과 구조기준 등을 구조규칙에 규정하여 구조안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다. 연구기관 · 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 등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이 규칙의 기술적 기준과 동등이상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 된 것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 그에 의할수 있도록 규정함.

라.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외력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도록 하고, 그 밖에 건축물의 실황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마.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지하수압 및 토압, 온도하중, 유체압 등 건축물에 작용 하는 설계하중 및 외력에 대하여 하중의 산정기준, 구조설계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함.

바. 목구조 건축자재 생산기술의 발달 및 건축공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주요구조부(바닥 · 지붕 및 계단을 제외 함)가 목구조인 건축물의 규모제한을 상향(지붕높이 13미터 18미터이하, 처마높이 9미터 15미터이하) 조정 하고 비보강조적조 건축물의 규모(지붕높이 15미터이하, 처마높이 11미터이하)를 제한함.

사.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 · 조적식구조 · 블록구조 · 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도록 함.

아.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로서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목구조로 된 부분에 대

한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가새, 바닥틀 및 지붕틀, 방부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

자. 벽돌구조 · 돌구조 · 콘크리트블록구조 등 조적식구조의 건축물이나 이와 목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 축물로서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대한 기초, 내력벽, 간막이벽, 테 두리보, 개구부, 담 등에 대해 규정함.

차.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로서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한 기초, 내력벽, 테두리보, 담 구조등에 대해 규 정함.

카.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로서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의 배합 · 양생, 거푸집, 피복두 께, 보 · 슬라브의 구조 등에 대해 규정함.